

## 신청 방법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은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정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서 입수**

금부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 시점에 주민표가 있는 시정촌(신청 장소)으로부터 신청서를 입수하십시오.
- 2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빠짐 없이 기입하십시오.
- 3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시정촌으로 우송하거나 시정촌의 창구에 직접 제출하십시오.
- 4 금부금 지급**

지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신청서에 기재된 지정 계좌에 금부금이 입금됩니다.  
※계좌가 없는 사람 등은 시정촌의 창구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두 가지 중의 한 금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노령 기초 연금 등 임시 복지 금부금의 가산 대상 연금 수당 등의 재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2014년 9월 30일까지 재정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가산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설명 부분도 읽어 보십시오.

## 문의처

○ 신청 방법에 관한 문의 : 각 시정촌  
(신청 장소는 2014년 1월 1일 시점에 주민표가 있는 시정촌입니다.)

○ 제도에 관한 문의 : 후생노동성  
두 가지 금부금 전용 전화  
0570-037-192

홈페이지

2つの給付金

검색



(두 가지 금부금)



'임시 복지 금부금'(간소한 금부 조치)나 '육아 세대 임시 특례 금부금'과 관련한 '보이스 피싱'이나 '개인정보 사취'에 주의하십시오.

시정촌이나 후생노동성 등을 사칭한 수상한 전화나 우편물이 도착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정촌이나 경찰서(또는 경찰 상담 전용 전화(#911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드립니다. 두 가지 금부금.

임시 복지 금부금

대상자

시정촌민세  
비과세자

※과세자의 부양 친족과 생활보호 수급자 등은 제외

1인당 1만 엔

연금이나 아동부양수당 등의 수급자는 1만 5천 엔

육아 세대 임시  
특례 금부금

대상자

1월분

아동수당 수급자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인 사람이나 생활보호 수급자 등은 제외

아동 1인당 1만 엔

수급 자격 유무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이란

사회보장제도를 재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안정시킴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입니다.  
○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되었습니다.※  
○ 인상분은 모두 육아, 의료 개호, 연금을 충실화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반동 감소를 완화해서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고, 그 후의 경제 성장력 향상과 선순환의 실현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경제 정책 패키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두 가지 금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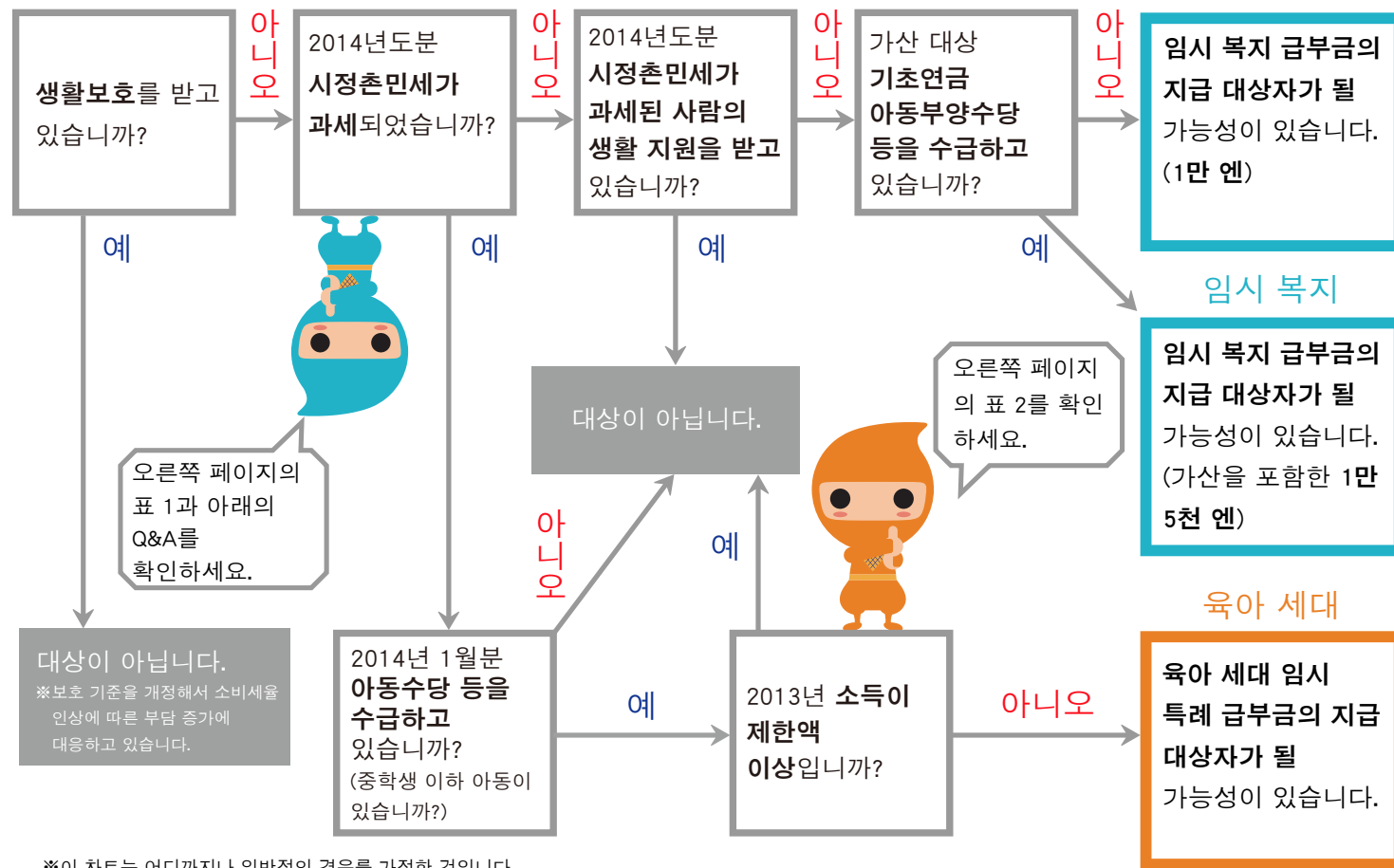
※ 2015년 10월부터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도록 세제발본개혁법에 정해져 있으나, 경제 상황 등을 다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가쿠닌자

## 대상자 진단 차트

기준일은 2014년 1월 1일입니다.



## 임시 복지 급부금

## 지급 요건

### ○지급 대상자

2014년도분 시정촌민세가 과세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과세된 사람에게 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생활보호 수급자인 경우 등 ] 은 제외됩니다.

### ○지급액

1인당 10,000엔. 아래의 <가산 대상자>는 1인당 5,000엔을 가산.

《가산 대상자》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등의 수급자\*1  
아동부양수당, 특별장애자수당 등의 수급자 등\*2

\*1. 2014년 3월분 수급권이 있고 4월분 또는 5월분 연금이 지급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2014년 1월분 수당 등을 수급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표 1 【시정촌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 수준의 기준(비과세 한도액)】  
(급여 소득자) (공적 연금 등 수급자)

구분	비과세 한도액* (급여 수입 기준)	구분	비과세 한도액* (연금 수입 기준)
독신	100만 엔	독신	65세 이상 155만 엔
부부	156만 엔	독신	65세 미만 105만 엔
부부+자녀 1인	205.7만 엔	부부	65세 이상 211만 엔
부부+자녀 2인	255.7만 엔	부부	65세 미만 171.3만 엔

※도쿄도 23구 등의 경우

후쿠시 가쿠닌자

## 육아 세대 임시 특례 급부금

## 지급 요건

### ○지급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① 2013년 1월분 아동수당 특례 급부※를 수급
- ② 2013년 소득이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표 2의 한도액 기준 미만인지 여부)

※특례 급부란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인 사람에 대해 아동 1인당 월 5,000엔을 지급하고 있는 급부금입니다.

### ○대상 아동

지급 대상자의 2014년 1월분 아동수당 특례 급부 대상이 되는 아동 단,

'임시 복지 급부금'의 대상이 되는 아동 생활보호 수급자로 되어 있는 아동 등 ] 은 제외됩니다.

### ○지급액

대상 아동 1인당 10,000엔

표 2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급여 수입 기준)】

구분 (부양 친족 등의 수)	한도액 기준 (급여 수입 기준)
자녀 1인(1인)	875.6만 엔
부부+자녀 1인(2인)	917.8만 엔
부부+자녀 2인(3인)	960만 엔

확인하세요!

고소다테 가쿠닌자

Q. 자신이 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A. 예를 들어,  
○자신의 급여 지급 명세서 '시정촌민세' 항목에 과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신의 급여나 연금 수입이 오른쪽 페이지 표 1의 비과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기본적으로 시정촌민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Q. 기준일(2014년 1월 1일) 다음날 이후에 이사한 경우 급부금 수령은 어떻게 됩니까?

A. 이번의 두 가지 급부금은 기준일(2014년 1월 1일) 시점에 주민표가 있는 시정촌에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대해서는 기준일 시점에 거주한 시정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준일(201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은 급부금의 대상이 됩니까?

A. [임시 복지 급부금]  
기준일(2014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급부금의 대상이 되지만, 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기준일로부터 지급이 결정될 때까지 사이에 사망한 사람도 임시 복지 급부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 세대 임시 특례 급부금]  
기준일에 태어난 아동은 대상이 되지만, 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태어난 아동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기준일로부터 지급이 결정될 때까지 사이에 사망한 아동도 육아 세대 임시 특례 급부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